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신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75

발의연월일: 2020. 7. 14.

발 의 자:신정훈·김경만·강선우

김영배 · 황운하 · 송갑석

이상헌 · 김수흥 · 이용빈

박성준 · 송영길 · 민홍철

이수진비・이용호・박영순

김성주 · 김영호 · 배진교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하도급거래가 체결되기 전 단계의 기술편취행위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사업협력을 할 것처럼 기술설명을 요청한 후 기술을 탈취·편취하여 실제 동일한 기술을 무단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5%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발생한 손해의 3배이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3제4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와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 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

제22조제5항 중 "제12조의3제3항"을 "제12조의3제3항·제4항"으로 한다. 제25조제1항 중 "발주자와 원사업자"를 "발주자, 원사업자 및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"로 한다.

제25조의3제1항제3호 중 "제12조의3"을 "제1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과 제2항"으로 한다.

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제26조제2항 중 "원사업자"를 "원사업자,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"로 한다.

제30조제1항제1호 중 "제12조의3"을 "제1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호"를 "제1호 및 제2호"로, "제2호 및 제3호"를 "제3호 및 제4호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

제35조제2항 본문 중 "제12조의3제3항"을 "제12조의3제3항·제4항"으로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원사업자"를 "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의3(기술자료 제공 요구	제12조의3(기술자료 제공 요구
금지 등) ① ~ ③ (생 략)	금지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
	<u>⇔</u>)
<u><신 설></u>	④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수
	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와 하도
	급계약 체결을 위하여 협의하
	는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자료
	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
	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
	<u>서는 아니 된다.</u>
제22조(위반행위의 신고 등) ①	제22조(위반행위의 신고 등) ①
~ ④ (생 략)	~ ④ (현행과 같음)
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, 제	⑤
8조제1항, 제10조, 제11조제1	
항·제2항 또는 <u>제12</u> 조의3제3항	<u>제12</u> 조의3제3항·
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	제4항
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	
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	
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	
금을 지급할 수 있다.	
⑥ ~ ⑧ (생 략)	⑥ ~ ⑧ (현행과 같음)
제25조(시정조치) ① 공정거래위	제25조(시정조치) ①
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	

까지 및 제9항, 제3조의4, 제4조부터 제12조까지, 제12조의2, 제12조의3, 제13조, 제13조의2,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,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<u>발주자와 원사업자</u>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, 법 위반행위의 중지, 특약의 삭제나 수정, 향후 재발방지,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 략)

제25조의3(과징금) ① 공정거래위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발주자·원사업 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 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·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 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- 1. 2. (생략)
- 3. 제3조의4, 제4조부터 제12조 까지, 제12조의2, 제12조의3,

발
주자, 원사업자 및 원사업자가
되려는 자
·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5조의3(과징금) ①
1.・2. (현행과 같음)
3
제12조의3

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 <u>제1항부터 제3항까지</u>-----한 원사업자 ------

4. ~ 6. (생 략) <신 설>

②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」 제55조의3부터 제55 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6조(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 제 조) ① (생 략)

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 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, 제 3조의4, 제4조부터 제12조까지,

4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
3제4항을 위반한 원사업자가
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
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
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다만,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
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
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
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
<u>다.</u>
③ 제1항과 제2항
<u>.</u>
26조(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
조) ① (현행과 같음)
②

제12조의2, 제12조의3, 제13조, 제13조의2,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,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 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 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 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 고.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 찰참가자격의 제한, 「건설산업 기본법」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, 그 밖에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 야 하다.

제30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
및 제9항, 제3조의4, 제4조부

	د اداداد	A) .] A]]
	- <u>원사업자,</u>	<u>원사업자</u>
가 되려는	<u> </u>	
_		
-JJ OV 그 (버) 크J /	1	
제30조(벌칙)	(I)	
1		

터 제12조까지, 제12조의2, <u>제12조의3</u> 및 제13조를 위반 한 자

- 2. ~ 4. (생 략)
- ② 다음 각 호 중 <u>제1호</u>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, <u>제2호</u> 및 <u>제3호에</u>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2. · 3.</u> (생 략)
- ③ (생 략) 제35조(손해배상 책임) ① (생 7 략)
 - ② 원사업자가 제4조, 제8조제1항, 제10조, 제11조제1항·제2항, 제12조의3제3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. 다만, 원사업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
<u> </u>
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제1호 및 제
<u>2호</u>
제3호 및 제4호
·.
1. (현행과 같음)
2.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
<u>3.•4.</u>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
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
제35조(손해배상 책임) ① (현행
과 같음)
②
<u>제12조의3제3항·제4항</u>
원사업자 또는
원사업자가 되려는 자
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